



귀하의 호주 이민을 축하합니다. 새 나라에서 부디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서류에는 호주에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분야에 관한 사항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으며, 이민 시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allforms/languages/languages\\_num.htm](http://www.immi.gov.au/allforms/languages/languages_num.htm)에서 영어 및 37개 언어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호주에 관한 정보의 주요 출처는 호주에 사는 친척, 친구, 지인들입니다. 그 외에도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별도로 조사해 볼 수 있다면 빨리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민시민부의 *Living in Australia* 웹페이지는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에서 가능하며 정착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Beginning a Life in Australia* 라는 제목의 책자가 영어 및 37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들 책자에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도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이 책자는 웹페이지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settle-in-australia/beginning-life/](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settle-in-australia/beginning-life/)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배경의 호주 사회

호주는 포용력 있는 다문화 사회로 문화, 민족, 언어 및 종교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주 국민은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호주 국민의 약 44%가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쪽 부모가 해외에서 출생했습니다.

호주 국민들은 매우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호주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며 어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다양성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사고방식과 전통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얻어집니다. 귀하는 호주에 신의를 지키며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지지하고, 모든 이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공정한 호주의 전통 가치관을 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가치관에는 법률 존중, 개인의 자유 및 존엄성, 남녀 평등, 타인 존중,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공평관용이 포함됩니다. 연방정부 및 주/테리토리 정부의 법률은 다양한 근거로 (인종, 성별, 장애, 연령 혹은 성적 성향 등) 여러 공공생활 영역에서의(취업, 교육, 숙소, 물품 및 서비스 이용, 정부조치 등) 차별대우를 금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호주의 국어입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원주민 언어를 포함하여 260여 개입니다. 영어를 못하시면 도착하시는 대로 가능한 빨리 영어를 배우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자격 여부에 따라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AMEP)을 통해 무료 영어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5쪽을 참조하십시오.

## 통관절차 및 검역

호주 재외공관은 호주의 통관절차 및 검역 규정에 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호주 재외공관은 호주로 가져와도 되는 것들과 안되는 것들, 가정용품 및 동물/동물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특별 조건, 그리고 관세에 관하여 알려드릴 것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www.customs.gov.au](http://www.customs.gov.au)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돈과 은행거래

떠나기 전에 여행자수표 또는 그 외의 유통 화폐(미화, 호주화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화는 대부분의 호주 국제 공항에서 호주화로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보관합니다. 도착후 6주 이내에 이들 금융기관에 계좌를 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6주가 지난 후에 계좌를 열려면 여권 외에 다른 신분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교통

공항에 도착한 후에는 본인의 숙소로 가는 교통편을 찾으셔야 합니다. 모든 국제공항과 대부분의 기타 공항에는 택시와 버스가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호주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은 단기간 동안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 또는 테리토리 교통국에 연락하여 운전 면허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하십시오. 지역 전화번호부를 보면 해당 기관들과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은 무거운 벌금이나 면허증 취소 혹은 구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주 법은 속도 위반이나 음주 운전에 대해 엄격합니다. 운전 중에 술을 마시거나,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호주 법은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 혹은 어린이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을 규정합니다.

## 주택

단독주택/아파트를 임차/구매하려면, 신문 광고나 인터넷 또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차할 경우에는 한 달치 집세에 상당하는 보증금 지불과 더불어 한 달치 집세 선불이 통례입니다. 호주에서의 주택은 구하기가 어렵고 집세가 비쌀 수 있습니다.

## 학교

학교 교육은 5세에서 15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의무적입니다. 의무교육 연령은 주 및 준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켜야 합니다.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들은 유치원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파트 타임으로 운영되며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각 지역 학교들에 관한 정보는 주 또는 테리토리 교육부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화부를 보면 연락처들이 나와있습니다.

## 호주에서의 안전

여느 나라처럼 호주에도 피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바다나 강에서의 수영은 매우 위험하며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해안에서는 붉은색과 노란색 깃발 사이에서만 수영하거나 수영을 아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닷가 바위 위에서의 낚시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호주 숲에는 위험한 뱀과 곤충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는 늦은 밤에 개인적 안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 호주에서의 생활비

호주에서의 생활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적어도 2년 동안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직업을 빨리 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호주까지의 여비, 가재도구 운송, 새 살림 차리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 Centrelink 수당 및 서비스

호주 정부는 Centrelink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역할만 하며 각자의 특정한 요구사항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서는 Centrelink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Centrelink 사무소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지역 전화번호부에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131 202로 전화하면 센터링크 직원에게 한국어로 문의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역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전화번호는 호주 전역에서 시내 통화료가 적용됩니다. 공중전화나 휴대폰을 사용하면 통화료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Centrelink는 번역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하여 서비스 및 수당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역된 Centrelink 출판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31 202로 전화하시거나 Centrelink 홈페이지 웹사이트 [www.centrelink.gov.au](http://www.centrelink.gov.au) 를 방문하여 'We speak your language' 를 선택하십시오.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사회보장 수당이나 국제협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필요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centrelink.gov.au](http://www.centrelink.gov.au)

우편: Centrelink International Services  
GPO Box 273  
HOBART TAS 7001  
AUSTRALIA

전화: 131 673 (호주 내 Centrelink 국제 서비스)  
131 202 (한국어로 된 정보)  
+613 6222 3455 (호주 외 지역)  
(주: 호주 외부에서 Centrelink 국제 서비스에 전화할 경우 무료 통화 번호가 여러 국가에서 가능합니다. Centrelink 웹사이트에서 무료 통화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수당

자녀 양육비를 돕는 가족 수당에는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이민자들은 또한 Medicare Australia 하의 보건 의료를 바로 이용하게 됩니다.

Family Assistance 서비스는 모든 Medicare 및 Centrelink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여러 언어로 가능한 안내문을 포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familyassist.gov.au](http://www.familyassist.gov.au)

전화: 136 150 (호주 내)  
131 202 (한국어로 된 정보)

일반적인 조기 아동 교육 및 아동 보육 정보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www.mychild.gov.au](http://www.mychild.gov.au)

전화: 133 684 (호주 내)

## 새로 도착한 거주인의 대기 기간

호주에 새로 도착한 이민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Centrelink의 수당을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새로 도착한 거주인은 실업 수당 (Newstart Allowance 혹은 Youth Allowance) 등 대부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기 전까지 대기 104주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라고 함)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간과 기간의 계산 방법 그리고 적용되는 사람은 호주 도착과 신청하는 수당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든 상관 없이 호주 거주인으로서 호주에서 보낸 기간은 대기 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새로 도착한 거주인의 대기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자녀를 가지거나 직장을 잃거나 혹은 병이 생기거나 기타 상황이 변하면 즉시 Centrelink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로 도착한 거주인의 대기 기간 면제

새로 도착한 거주인의 대기기간 면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하가 호주 시민이거나 호주 시민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난민 자격으로 도착했거나 인도주의 프로그램 하에 있거나 특정 비자 서브클래스 소지자일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실질적 상황 변경 때문에 곤란을 겪을 경우 특별 수당 (Special Benefit)에 해당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찾을 수 없는 상태는 상황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수당을 위한 대기 기간에서 일부 사람들을 면제시키는 추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면제에 해당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Centrelink에 클레임을 접수시켜야 합니다.

## 자격 충족을 위한 거주 요건

연금 및 일부 수당은 새로 도착한 거주인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격 충족을 위한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양육 수당 및 미망인 수당은 자격 충족을 위한 104주의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2. 노인 연금 및 장애자 지원 연금은 해당 자격을 위한 10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들 요건에 일부 예외가 있는데 그 예로는 난민이거나 호주 도착 후에 장애자가 되었거나, 호주가 사회 보장 협약을 맺은 나라 출신이며 그 협약이 여러분이 신청하는 수당에 적용될 경우 등입니다.

## (호주 시민이 아닌) 뉴질랜드 시민

뉴질랜드 여권으로 호주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도착 시에 대개 특별 범주 비자 (SCV)가 발행됩니다. 2001년 2월 26일에 호주에 있었던 SCV 소지자들은 대체로 보호 SCV 소지자들로 간주됩니다. 2001년 2월 26일 이후에 호주에 도착한 사람들은 대체로 비보호 SCV 소지자들로 간주됩니다.

보호 SCV 소지자는 호주 거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며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자격 기준 및 관련 대기 기간 등의 특정 규정을 만족할 경우 대체로 모든 범위의 Centrelink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2월 26일 이후 최소한 10년 동안 호주에 지속적으로 살아 왔으며 비보호 SCV 비자가 있는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들은 실업수당 (Newstart Allowance), 질병 수당 (Sickness Allowance) 및 청소년 수당 (Youth Allowance)에서 한 번만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사회보장 협약을 통해 뉴질랜드 시민들이 노인 연금, 장애자 지원 연금 혹은 간호인 수당을 지급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호주에 체류하는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들은 대기기간 이후 특정 할인 카드에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Family Assistance Office로부터의 수당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보증

지원 보증 (Assurance of Support)은 호주 거주인 혹은 기관 (보증인)과 호주 정부 사이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보증인은 호주 이민자 (피보증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하여 그 피보증인이 Centrelink 수당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지원 보증은 발급된 비자 유형에 따라 2년 혹은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양가족이 지원 보증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Centrelink에서 특정 수당을 클레임할 경우, 보증인이 그 금액 전액을 정부에 상환하게 됩니다.

## 보건

호주 정부는 Medicar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의료, 검안사 및 병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Medicare는 공립병원의 공립 (Medicare) 환자들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사, 전문의, 해당되는 검안사 및 치과의사 (특정 서비스에만 해당)와 같은 의료전문인들의 치료를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Medicare 안전망 상한선에 이르게 되어도 의사 진료 혹은 의료 검진을 받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Medicare의 자격 여부를 알아보고 등록을 하려면 여권, 여행서류 및 영주권 비자를 지참하고 Medicare Australia 사무소에 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성에 제출한 영주권 신청 내용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Medicare에 등록할 자격이 없으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격 여부를 알아 보려면 귀하의 지역 Medicare 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약 3주 후에 본인의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될 때까지 임시 Medicare 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비를 지불하고 나서 Medicare에서 혜택 금액을 받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또한 의약품 혜택 제도 (PBS) 하에서 일부 약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 해 동안 다량의 약품이 필요할 경우, PBS 안전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BS 안전망에 도달하고 약사가 여러분에게 PBS 안전망 카드를 제공한 이후에, 여러분은 그 해의 남은 기간 동안 해당 PBS 약품을 무료로 혹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비싼 약품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의사가 그러한 약을 처방하면, 여러분은 더 많이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Medicare 및 PBS는 Medicare Australia가 관할합니다.

Medicare Australia는 호주 아동 예방접종 기록부 (Australian Childhood Immunisation Register)를 관리하며 이 기록부는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실시한 예방접종 내용을 기록합니다.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예방접종이 완료되었는지를 호주의 가정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꼭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아동의 예방접종 내력은 자녀가 학교에 등록할 때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또한 일부 가족 지원 (Family Assistance) 수당을 받을 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Medicare Australia는 Australian Organ Donor Register (호주 장기 기증자 명부 - Donor Register)를 관리합니다. 16세 이상은 Donor Register에 자신의 장기 기증 의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Donor Register에 기증 의사를 기록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며 기증하기를 원하는 장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조직 이식은 심각한 질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2의 삶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Medicare Australia는 또한 십대들을 위한 메디케어 치과 플랜 (Medicare Teen Dental Plan)을 운영합니다. Medicare Teen Dental Plan은 매년 예방 차원의 치과 점검 비용으로 12세에서 17세까지 자격이 되는 청소년들을 지원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편지와 바우처가 발송됩니다. 예방 차원의 치과 점검은 X-레이, 스케일 및 클린, 불소 치료, 구강 위생 지침, 식이 조언 및 구멍이나 균열의 충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Australia는 19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정보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 자료에는 Medicare Australia의 서비스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또한 혜택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들에 관한 설명이 실려있습니다. 정보자료 사본은 Medicare Australia 웹사이트 혹은 귀하 지역의 Medicare 사무소를 통해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연락처

웹사이트: [www.medicareaustralia.gov.au](http://www.medicareaustralia.gov.au)

이메일: [info@medicareaustralia.gov.au](mailto:info@medicareaustralia.gov.au)

전화: 132 011\* - Medicare  
1800 020 613\*\* - 의약품 혜택제도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1800 653 809\*\* - 호주 아동 접종 등부 (Australian Childhood Immunisation Register)  
1800 777 203\*\* - 호주 장기 기증자 명부 (Australian Organ Donor Register)  
1800 552 152\*\* - 청각 및 언어 장애자 (Hearing and speech impaired)  
131 450\* -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우편: Medicare Australia  
GPO Box 9822  
귀하 지역 수도

## 개인의료 보험

호주국민들의 상당수가 개인의료 보험 가입을 선택합니다. 개인의료 보험은 사립병원이나 공립병원에서 개인보험 환자로 치료받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커버해 주며, 치과와 대부분의 시력보정 서비스 및 앰블런스 운송 등, Medicare가 커버하지 않는 몇몇 서비스들까지도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개인 의료 보험 가입을 고려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1. 사립 건강보험 환급 - 여러분이 Medicare 자격에 해당되며, 병원 치료 커버, 일반 치료 '보조 (ancillary) 혹은 추가 (extras)' 혹은 이 두 가지 커버를 모두 제공하는 적법한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립 건강보험 환급을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Medicare 부가 징수금 - 대부분의 호주 납세자들은 Medicare 징수금이 세금 납부에 포함됩니다. Medicare 부가 징수금은 추가 하나의 부가금으로서, 병원 보험에 들지 않고 특정한 수입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버는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이 수입 한도 금액은 (2011-12 회계연도 기준) 독신의 경우 연간 AUD80,000이며 부부 혹은 가족의 경우 연간 AUD160,000 입니다. 이 한도 금액은 평균 급여의 변화에 맞춰나가기 위해 매년 조정될 것입니다.

\*통화료 적용

\*\*휴대폰 혹은 공중전화 통화에만 통화료 적용

3. 평생 의료보험 (Lifetime Health Cover, LHC) - LHC는 사립 의료보험 병원 커버를 위한 기본적 프리미엄에 추가하여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부가금입니다. LHC 부가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LHC 만기일 이전에 호주 등록 보험업체로부터 병원 커버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만기일은 일반적으로 31번째 생일을 지난 후 7월 1일이지만, 호주의 새로운 이민자에게는 LHC 만기일이 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 도착한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이 만기일 후에 병원 커버를 구매하면, LHC 부가금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가금은 병원 커버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0세 이후의 각 연도마다 붙는 프리미엄의 추가 2%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40세가 되어 병원 커버에 가입할 경우, 병원 커버 비용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31세가 넘어서 호주에 입국하는 새 이민자들에게는 완전한 Medicare 혜택 자격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립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증가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Medicare에 등록이 된 이후 첫 해에 병원커버 등록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Medicare에 등록이 된 이후 12개월 이후에 병원커버에 가입하시면, 프리미엄에 추가로 LHC 부가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31세 미만일 경우, LHC 만기일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31번째 생일을 지난 후 7월 1일).

개인의료 보험에 관한 상세한 정보 입수 방법:

웹사이트: [www.privatehealth.gov.au](http://www.privatehealth.gov.au)  
 이메일: [privatehealth@health.gov.au](mailto:privatehealth@health.gov.au)  
 우편: MDP 954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GPO Box 9848  
 CANBERRA ACT 2601  
 AUSTRALIA

## 호주에서의 취업

호주의 노동시장은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호주에서의 취업은 경제요인, 찾는 직종의 타입, 국내 여러 지역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이민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고도의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은 신청자들의 경우라도 취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호주의 실업률은 4.9%였습니다. 영어 사용 주요 국가들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4.1%였고 기타 다른 국가들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실업률은 6.1%였습니다. 2006년부터 호주에 도착한 이민자들의 추산된 실업률은 7.6%였습니다 (원자료). 일반적으로, 호주에서의 정착 기간이 긴 이민자들은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이민 카테고리의 이민자들이 다른 카테고리의 이민자들보다 실업률이 낮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전망을 알아보시려면, 구인 광고란이 있는 호주 신문을 읽어보십시오. 온라인 상에도 채용관련 웹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특별히 적용되는 요구사항이나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많은 직종들의 경우, 취업 응모자들이 호주 주/테리토리 정부 기관에 등록될 수 있거나 면허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하며, 그리고/또는 전문직 또는 산업 기관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적용되는 등록 또는 면허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들도 구직 의사가 있든 없든 호주 도착 즉시 자신들의 취업 전망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직업이 없는 이민자들은 도착 후 되도록 빨리 Centrelink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가장 최근에 온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104주 동안 사회보장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Job Services Australia를 통해서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구직 지원 서비스를 제한적 범위에서만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서 기타 다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Job Services Australia를 제한 없이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서비스, 구직, 기술 인정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Australian JobSearch (호주에서의 직업, 취업 전망, 인력난 분야, 직업 경력에 관한 정보) [www.jobsearch.gov.au](http://www.jobsearch.gov.au)
- Australian Workplace (호주 직장에 관한 정보) [www.deewr.gov.au](http://www.deewr.gov.au)
-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직업 자격증 인정) [www.deewr.gov.au/tra](http://www.deewr.gov.au/tra)
- 호주 기술 인정 정보(해의 자격증 및 기술 인정 기관) [www.immi.gov.au/asri](http://www.immi.gov.au/asri)

## 호주 세금

호주에서는 직업, 사업 혹은 투자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지불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병원, 학교, 도로 및 철도와 같이 주요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개인 및 사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합니다.

### 세금 및 개인

일을 할 경우, 여러분의 고용주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임금 혹은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각 회계연도 말에 여러분은 총 소득과 공제된 세금액수를 보여주는 세금환급 신청서 (tax return)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일부 공제 및 세금 차감을 청구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세금등록번호 (TFN)를 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TFN은 신분 확인 및 기록 보관 목적을 위해 개인 및 기관에 발행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TFN이 없을 경우, 고용주가 급여에서 최대한의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TFN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이를 팔거나 주는 것은 본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과 사업

호주에서 사업체 운영을 고려할 경우, TFN과 호주 사업체 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AUD75,000을 초과할 경우 상품용역세 (GST) 등록도 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사업체 혹은 자산을 매각할 경우 연계되는 자본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 법은 또한 각 피고용인을 위해 퇴직 연금 계정에 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며 피고용인으로부터 세금을 취해서 국세청으로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

사업체 및 개인이 세금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국세청은 다양한 도움 및 지원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는 영어 및 기타 언어로 된 간행물, 세미나, 온라인 정보 및 면담 방문 등을 포함합니다. 국세청은 '호주 세금 - 알아야 할 사항 (Tax in Australia - what you need to know)' 이라고 하는 무료 안내 자료를 제작했으며 이는 DVD 혹은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Tax in Australia' 는 세제, TFN, 소득세 접수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영어를 포함하여 15개 국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

웹사이트: [www.ato.gov.au](http://www.ato.gov.au)

전화: 132 861 (호주 내)

이메일: [diversity@ato.gov.au](mailto:diversity@ato.gov.au)

## 이민자 커뮤니티 정착 서비스

이민시민부는 이민자 및 난민들이 호주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호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종류의 정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착 지원금 프로그램

정착 지원금 프로그램 (SGP)은 해당되는 이민자 및 난민들이 자립하고 호주 사회에 되도록 빨리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민시민부는 정착 지원금 프로그램 하에서 비영리 기관 및 정부 서비스 조달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자격을 갖춘 고객들에게 정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주권자이고 지난 5년 내에 아래 자격으로 호주에 도착한 경우, 정착 지원금 프로그램 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도주의 입국자
- 영어 능력 수준이 낮은 가족 이민자
- 기술 이민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어 능력 수준이 낮고 시골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

영어 능력 수준이 낮은 시골이나 지방의 일부 임시 거주자 (Prospective Marriage, Provisional Partner, Provisional Spouse 및 Provisional Interdependency 비자 소지자 및 이들의 피부양자들)도 정착 지원금 프로그램 서비스에 해당 자격이 있습니다.

정착 지원금 프로그램에서는 주택, 보육, 고용 및 교육 등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정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네트워크와 연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정착 서비스 제공기관은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settle-in-australia/find-help/where-to-help/](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settle-in-australia/find-help/where-to-help/)를 방문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단계는 영어를 익히는 것입니다. 해당 자격이 될 경우,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AMEP)에서 기본적인 영어 수업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일부 업무 상황을 위한 영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AMEP에 해당 자격이 될 경우, 최대 510시간까지, 혹은 기능적 영어를 익힐 때까지 (이 두 조건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도달한 조건에 따라)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 오기 이전 극심한 충격이나 고문 등 어려운 경험을 겪은 인도주의 입국자일 경우 혹은 정규 학교 교육을 조금 밖에 받지 못한 경우, 영어 수업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 도착하거나 영주권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AMEP 프로그램 제공 기관에서 AMEP 학급에 등록 해야 합니다. 이후 1년 이내에 가능한 빨리 수업을 시작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수업을 마쳐야 합니다. 이들 기간은 특정 상황에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

AMEP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공합니다.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받을 수도 있으며 AMEP 원거리 학습을 통해 가정에서 배울 수도 있으며 아니면 가정 교사의 도움으로 영어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학업 연령이 되지 않은 자녀를 둔 경우에는 수업을 받는 동안에 무료 보육이 제공됩니다.

AMEP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록 가능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민시민부 문의라인에 131 881로 연락을 하거나 AMEP 웹사이트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amep](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amep) 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국립 번역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

한국어를 하지 않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경우, TIS National이 매일 24시간 통역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TIS National은 131 45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이야기하길 원하는 정부 부서, 사업체 혹은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여러분을 위해 TIS National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TIS National은 서비스 요금제로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통역 비용은 여러분이 대화하는 정부 부서, 사업체 혹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지불합니다.

의사를 만날 때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의사에게 Doctor's Priority Line에 있는 TIS National에 연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전화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사 및 약국에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TIS National은 호주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로서 호주 지역사회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직 통역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영어와 영어 이외의 언어 중 하나에 모두 능통하실 경우 TIS National의 계약직 통역사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1300 132 621로 TIS National Interpreter 연락 매니저에 연락하십시오.

TIS National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immi.gov.au/tis](http://www.immi.gov.au/tis)에서 가능합니다.

호주에 도착한 지 혹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미만이며 해당 자격이 되는 이민자들을 위해 정착 관련 개인 문서의 한영 번역 (예: 출생 혹은 결혼 증명서, 운전 면허증, 교육 및 고용 문서)을 제공합니다. 이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번역을 위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learn-english/client/translation\\_help.htm](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learn-english/client/translation_help.htm)를 방문하십시오.

## 교육 고용 직장 관계부 영어 프로그램

영어, 수리 및 읽고 쓰기 훈련도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DEEWR) 및 주/준주 정부 관리 하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합니다. DEEWR는 노동 연령 (15-64세) 고객들을 위해 고용 관련 영어, 수리 및 읽고 쓰기 프로그램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언어, 수리 및 읽고 쓰기 프로그램 (LLNP)으로서 직업을 구할 때 필요한 언어, 수리 및 읽고 쓰기 훈련을 해당 구직자들에게 80시간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LLNP에서는 고객의 언어 및/혹은 수리와 읽고 쓰기 기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고용을 확보하거나 진학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불이익을 받은 고객들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보충 훈련 (Complementary Training) 을 통해 특수훈련도 제공합니다. 선정된 비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일부 구직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해당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직장 영어 및 읽고 쓰기 프로그램 (WELL)으로서, 호주 직원들에게 영어, 수리 및 읽고 쓰기 기능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에 재정지원을 하여 이들 직원들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의 고용 및 훈련의 필요사항을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호주 정부는 또한 새로 도착한 이민자의 초등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2언어 신규 이민자 (ESL-NA) 프로그램 하에서 집중 영어 수업을 받도록 주 및 준주 정부와 비정부 교육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어권에서 새로 도착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및 성과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본 교육 과정 활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이들의 영어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집중 영어 센터/유니트 혹은 학교에서 최소한 6개월의 집중 영어 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관할 지역은 학생들의 필요사항, 제2언어로서의 영어 (ESL) 교과과정 그리고 집중영어 수업 제공에 대한 자가 평가를 개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웹사이트: [www.deewr.gov.au](http://www.deewr.gov.au)  
[www.deewr.gov.au/skills/pages/default.aspx](http://www.deewr.gov.au/skills/pages/default.aspx)

전화: 1300 363 079

## 호주 시민권

시민이 되길 원하는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 요건은 호주에서 특정 기간을 보내야 하고 신원조회에서 결격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호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시민권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에 대한 정보, 거주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 기타 자격 기준 그리고 신청 양식에 대한 정보는 시민권 웹사이트 [www.citizenship.gov.au](http://www.citizenship.gov.au)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혹은 시민권 정보 라인 131 880 (호주 내에서 문의)에 연락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정보 및 조언

*Beginning a Life in Australia* 책자를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영어 및 37개 국어로 가능하며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settle-in-australia/beginning-life/](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settle-in-australia/beginning-lif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착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은 이민시민부의 호주 및 해외 사무소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위한 연락처:

이민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전화: 131 881 (호주국내 일반문의)  
[www.immi.gov.au](http://www.immi.gov.au)

Information on migrating to Australia  
(호주 이민에 관한 정보)  
[www.immi.gov.au/migrants/](http://www.immi.gov.au/migrants/)

Information on Life in Australia (호주생활에 관한 정보)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

List of Australian Immigration Offices overseas  
(호주이민시민부 해외사무소 목록)  
[www.immi.gov.au/contacts/overseas/](http://www.immi.gov.au/contacts/overseas/)

Settlement Services Locator  
(정착 서비스 찾기)  
[www.immi.gov.au/living-in-australia/settle-in-australia/find-help/where-to-help/](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settle-in-australia/find-help/where-to-help/)

시민권 웹사이트  
[www.citizenship.gov.au](http://www.citizenship.gov.au)

## 추가 정보

Life Threatening Emergency [생사에 관계되는 응급사태]  
(화재, 경찰, 구급차) - 24시간  
전화: 000

번역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  
전화: 131 450  
[www.immi.gov.au/tis/](http://www.immi.gov.au/tis/)

Australian Government Regional Information Service  
[호주 정부 지역 정보 서비스]  
전화: 1800 026 222  
[www.regionalaustralia.gov.au](http://www.regionalaustralia.gov.au)

호주 기술 인정 정보 웹사이트  
[www.immi.gov.au/asri](http://www.immi.gov.au/asri)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전화: 1300 360 992  
[www.deewr.gov.au/tra](http://www.deewr.gov.au/tra)

호주 정부 웹사이트  
[www.australia.gov.au](http://www.australia.gov.au)

홈페이지

[www.immi.gov.au](http://www.immi.gov.au)

일반 문의라인

호주의 정규업무시간 동안  
**131 881**에 전화하여 오피레이터와  
통화하십시오 (정규업무시간 외에  
전화하면 녹음된 정보가 제공). 호주 국외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호주  
재외공관에 통화하십시오.